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읍면 기능전환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까지 연장하여 읍면 기능전환업무는 물론 지방분권, 지역혁신 업무 등을 수행코자 함

2. 주요내용

조례 1728호(2003. 3. 6)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"2004년 6월 30일"을 2005년 6월 30일"로 한다로 함

3. 내 용 : 붙임

4. 신. 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참고자료 :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28호(2003.3.6)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2항중 "2004년 6월 30일"을 "2005년 6월 30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(2003. 3. 6 조례 제1728호) ①생략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자치발전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부칙(2003. 3. 6 조례 제1728호) ①현행과 같음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2005년 6월 30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